

인천광역시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방발전 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0. 4. 12(월)

건설교통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: 2010. 3. 23
- 나. 제안자 : 인천광역시장
- 다. 회부일자 : 2010. 3. 23
- 라. 상정일자 : 2010. 4. 5(제183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)
 - 제안설명 : 도시계획국장 김진영
 - 검토보고 : 건설교통전문위원 김동호
 - 질의 및 토론
 -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폐지이유

- 공여구역주변지역,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정한 「인천광역시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 조례」의 근거법령이 개정(삭제)되어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「인천광역시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 조례」는 이를 폐지한다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- “공여구역”이란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시설 및 구역을 말하며, “반환 공여구역”이란 공여구역중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을 말함.
- 우리시 공여구역은 강화군에 소재한 고려산의 통신부대 지역으로 면적은 약 44,509m²이며, 반환공여구역은 부평미군부대로 면적은 479,562m²임.
- 또한 “공여구역 주변지역” 및 “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”이란 공여구역 및 반환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·면·동 및 이에 연접한 지역을 말하며,
- 주변지역의 범위에 대하여는 「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」(이하‘법’이라한다)에서 규정하고 있으며, 우리시의 공여구역 주변지역은 강화군 하점면으로 면적이 약 36.21km²이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은 부평구 산곡 1,2,3,4동, 부평1,3동으로 면적이 약 7.14km²가 지정되어 있음.
- 「인천광역시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 조례」는 이러한 공여구역 주변지역 또는 반환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 등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4조 및 제6조에 근거하여 2007년 2월 20일 제정하여 같은 해 5월17일 지방발전위원회를 구성하였음.
- 본 안건은 상위법이 2009년 12월 29일 개정되면서 「인천광역시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방발전 위원회 조례」의 상위 근거법령의 조문이 삭제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다른 이견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특이사항 없음

5. 토론요지

- 가. 찬 성 : 성용기, 강문기, 허식, 이재호, 박승희, 이은석 위원
- 나. 반 대 : 없음.

6. 심사결과

- 원안가결(재석위원 전원찬성 : 6명)

7. 기타 특이사항

- 없 음

붙임 : 인천광역시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1부. 끝.

인천광역시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방발전 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

인천광역시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 조례는 폐지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